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의무위탁 선거 대상에 신용협동조합 추가〉

■ 신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287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신정훈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2. 19.
3. 회 부 일 : 2025. 2.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의 조합장선거 및 중앙회장선거는 현행법상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선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하는 대상 선거인 반면,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선거 및 중앙회장선거는 해당 기관이 그 위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위탁 대상 선거임.

그런데 신용협동조합 역시 농협·수협 및 산림조합과 같이 조합원간의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금융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883개의 조합을 두고 1,676만명의 이용자(2019년 기준)를 대상으로 금융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고 볼 수 있음. 이를 고려할 때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과 중앙회장의 선출 역시 다른 조합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에도, 신용협동조합의 선거는 현행법에 따른 의무위탁 대상 선거에서

제외되어 있어 선거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를 의무위탁 대상 선거로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나아가 신용협동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가목 등).

Ⅲ. 검토의견

1.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위탁선거로 규정 및 관련 규정 정비(안 제3조, 제24조 및 제35조 등)

가.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의 의무위탁 대상 규정 (안 제3조)

개정안은 총자산 1천억원 이상을 보유한 신용협동조합¹⁾의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의 관리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
1. “공공단체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 ----- --.
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가. ----- ----- ----- -----및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나. ~ 라. (생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2. ~ 8. (생략)	2. ~ 8. (현행과 같음)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은 1960년대 서민·농민의 생활고와 고금리 문제를 지역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자조(自助) 조직으로 출발한 비영리 금융협동조합으로서 조합과 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함)로 구분됨.²⁾

2025년 2월 기준으로 865개의 조합과 약 665만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산규모는 약 153조원임.

조합과 중앙회의 임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원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조합은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음.³⁾

1) 2024년 12월 기준, 평균자산 1천억원 이상 지역조합(의무위탁)의 수는 458개, 1천억원 미만 지역조합(임의위탁)의 수는 222개임(신용협동조합 제출자료).

2)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2.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란 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9조(공동유대와 사무소) ① 조합의 공동유대는 행정구역·경제권·생활권 또는 직장·단체 등을 중심으로 하여 정관에서 정한다. 이 경우 공동유대의 범위, 종류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2조(공동유대의 범위 등)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종류별 공동유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조합 : 같은 시·군 또는 구에 속하는 읍·면·동. 다만, 생활권 또는 경제권이 밀접하고 행정구역이 인접하고 있어 공동유대의 범위 안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공동유대의 범위별로 재무건전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같은 시·군 또는 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동을 포함할 수 있다.
2. 직장조합: 같은 직장. 이 경우 당해 직장의 지점·자회사·계열회사 및 산하기관을 포함할 수 있다.
3. 단체조합: 다음 각목의 단체 또는 법인
가. 교회·사찰 등의 종교단체

3)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임원) ① 조합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 또는 3명을 둔다.

《신용협동조합 운영 현황》

(단위: 개, 천명,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월말
조합수	지역	674	677	678	679	680
	직장	122	120	119	115	114
	단체	77	73	72	72	71
	소계	873	870	869	866	865
조합원수	지역	6,036	6,217	6,266	6,209	6,176
	직장	261	256	242	239	234
	단체	268	254	251	251	249
	소계	6,565	6,727	6,759	6,699	6,659
자산 규모	지역	1,161,531	1,350,572	1,409,763	1,440,028	1,442,320
	직장	30,203	29,190	30,217	29,851	29,605
	단체	52,541	54,063	57,032	58,672	58,867
	소계	1,244,275	1,433,825	1,497,012	1,528,551	1,530,792

자료: 신용협동조합

그런데, 종전 「신용협동조합법」은 임원선거 관리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임의위탁하고 있었으나, 2023년 7월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총자산 1천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지역조합의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지역조합 이사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회장)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변경⁴⁾하였음.

제71조의2(임원의 선임 및 자격요건) ①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되,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 및 감사·감독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조합의 임원 또는 간부직원이 아닌 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의3(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조합은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72조(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⑧중앙회의 임원에 대해서는 제27조의2, 제27조의3제1항, 제31조제2항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4)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3(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②조합은 제27조제2항, 제3항 및 제9항에 따라 선출

현행법은 의무위탁선거와 임의위탁선거를 구분⁵⁾하여 의무위탁 대상 공공단체를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로 하고 있고, 의무위탁 대상단체에 한해 동법상 선거운동 및 벌칙규정⁶⁾ 등이 적용

하는 임원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지역조합은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출하는 이사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72조(임원의 직무와 임기) ⑨ 중앙회는 제7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출하는 중앙회 임원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중앙회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단체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 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다.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단체[「공직선거법」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에 따른 당내경선 또는 「정당법」 제48조의2(당대표경선사무의 위탁)에 따른 당대표경선을 위탁하는 정당을 제외한다]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체로서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려는 단체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위탁선거에 적용한다.

- 1. 의무위탁선거: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와 같은 조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는 선거
- 2. 임의위탁선거: 제3조제1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와 같은 조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선거

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장 선거운동

제22조(적용 제외)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 외의 위탁선거에는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공공단체등이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하는 선거(「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에 따른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는 제외한다)에는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를 적용한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0장 벌칙

제57조(적용 제외) ①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 외의 위탁선거에는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5조, 제66조제12호, 제68조제1항·제2항제2호 및 제4항·제5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공공단체등이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하는 선거(「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에 따른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는 제외한다)에는 제58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8호·제10호·제12호·제13호, 제67조, 제68조제1항, 같은 조

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의무위탁선거로 변경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를 의무위탁 대상단체에 반영하고 있지 않음.

특히,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은 부칙에서 조합 이사장의 동시선거일을 임기 시작일에 따라 2025년 11월 12일 또는 2029년 11월 14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앙회장선거에 대한 의무위탁은 개정법률 시행(2023.10.19.) 이후 실시하는 회장 선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⁷⁾하고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11월 12일 동시선거일에는 의무위탁에 해당하는 총자산 1천억원 이상의 조합이 없으나, 중앙회장의 경우 개정법률 시행(2023.10.19.) 이후 실시하는 회장선거가 2025년 12월에 예정되어 있으므로 2025년 12월 전까지는 현행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한다.

7) 법률 제19565호(시행 2023.10.19.)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중앙회장의 선거관리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참고로, 제72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중앙회장 선거관리를 의무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임)

제4조(지역조합 이사장의 동시선거에 따른 임기 및 선출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일부터 2023년 11월 21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사장의 임기가 시작되었거나 시작되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사장의 임기는 2025년 11월 20일까지로 한다.

② 2019년 11월 22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에 새로 선출되거나 임기가 시작되는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고 다음에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이사장의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사장의 임기는 2029년 11월 20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장 다음에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이사장의 선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최초로 동시 실시하고, 이후 임기만료에 따른 이사장의 선거는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11월의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 실시한다.

1. 제1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장 다음에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이사장의 동시선거일: 2025년 11월 12일

2. 제2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장 다음에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이사장의 동시선거일: 2029년 11월 14일

④ ~ ⑨ (생략)

향후 실시될 중앙회장 선거(2025.12.)까지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의무위탁선거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과 달리 각종 선거운동 규제(제7장 선거운동)와 벌칙(제10장 벌칙) 등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위탁선거로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의 선거사무관리, 선거운동규제 및 벌칙 등을 적용하게 하려는 것으로, 신용협동조합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봄.

다만,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은 부칙⁸⁾에서 지역조합 이사장의 동시 선거에 따른 임기 및 선출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어 동시이사장 선거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8) 법률 제19565호(시행 2023.10.19.)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지역조합 이사장의 동시선거에 따른 임기 및 선출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일부터 2023년 11월 21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사장의 임기가 시작되었거나 시작되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사장의 임기는 2025년 11월 20일까지로 한다.

② 2019년 11월 22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에 새로 선출되거나 임기가 시작되는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고 다음에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이사장의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사장의 임기는 2029년 11월 20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장 다음에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이사장의 선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최초로 동시 실시하고, 이후 임기만료에 따른 이사장의 선거는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11월의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 실시한다.

1. 제1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장 다음에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이사장의 동시선거일: 2025년 11월 12일

2. 제2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장 다음에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이사장의 동시선거일: 2029년 11월 14일

④ ~ ⑨ (생략)

현행법 제3조제7호9)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시이사장선거’의 정의에 ‘신용협동조합’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또한, 현행법 제13조(선거기간) 및 제14조(선거일)는 의무위탁 대상기관 이사장의 선거기간과 동시이사장의 선거일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의무위탁 대상기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선거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신용협동조합이사장의 임기만료일 등을 고려하여 현행법 제13조제1항 제1호¹⁰⁾의 선거기간에 ‘신용협동조합’을 추가하고, 현행법 제14조제1항¹¹⁾에 단서를 신설하여 신용협동조합의 동시이사장 선거일을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11월 중 두 번째 수요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9)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7. “동시조합장선거”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위탁하여 동시에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조합장선거를 말하고, “동시이사장선거”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위탁하여 동시에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이사장선거를 말한다.

10)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3조(선거기간) ① 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선거(이하 “조합장선거”라 한다)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이사장선거(이하 “이사장선거”라 한다): 14일

1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4조(선거일) ①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의 선거일은 그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3월 중 첫 번째 수요일로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한 신용협동조합이사장의 임기만료일 등을 고려하여 이사장선거의 선거기간을 14일로 하고, 동시이사장선거의 선거일은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11월 중 두 번째 수요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나. 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의 적용 대상에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을 추가(안 제24조)

개정안은 의무위탁 대상기관에 적용하고 있는 선거운동의 주체·기간·
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및 중앙회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①·② (생략)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선거별 선거운동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5항제1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제3항제1호 및 「산림조합법」 제3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선출방법 중 총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와 「새마을금고법」 제1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는 이사장선거: 제25조부터 제3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2. ----- ----- ----- ----- ----- ----- -- 선출하는 이사장선거와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사장선거: ----
3.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중앙회장선거, 「농업협동조합법」 제45	3. ----- -----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및 「신용협동조합법」 -----

조제5항제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제3항제2호 및 「 산림조합법」 제35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 및 「새마을금고법」 제18조제5항 단서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이사장선거: 제25조·제28조·제29조·제30조 및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에 따른 방법(제30조에 따른 방법은 중앙회장선거에 한정한다)	----- ----- ----- ----- ----- ----- ----- -----
---	--

현행법은 의무위탁 대상기관에 한하여¹²⁾ 제25조(선거공보), 제26조(선거벽보), 제27조(어깨띠·윗옷·소품), 제28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제29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30조(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30조의2(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제30조의3(선거운동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및 제30조의4(공개행사에서의 정책 발표) 등의 선거운동방법을 적용하고 있음.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위탁선거 대상에 추가함에 따라 농업협동조합 등 의무위탁 대상기관에 적용하고 있는 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용협동조합의

1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장 선거운동

제22조(적용 제외)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 외의 위탁선거에는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공공단체등이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하는 선거(「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에 따른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는 제외한다)에는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를 적용한다.

이사장 및 중앙회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 제24조는 의무위탁 대상기관의 조합장·이사장 및 중앙회장의 선출방법에 따른 선거운동 방법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조합 이사장은 조합원이 총회 또는 직접투표를 통해 선출¹³⁾하며, 중앙회장은 각 조합의 이사장들이 총회에서 선출하고 있음.¹⁴⁾

그런데, 개정안은 총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의 이사장 및 중앙회장의 선거운동 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의 직접투표로 이사장을 선출하는 방법을 규정한 현행법 제24조제3항제1호¹⁵⁾에도 ‘신용협동조합’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13) 두 방식의 차이는 투표가 총회에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별도의 투표소에서 진행되느냐 하는 점뿐이며, 절차나 효과는 동일함.

이에 따라 조합 이사장의 선거를 일반적인 선거와 같이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선거일 후보자 소개·소견 발표’라는 선거운동 방법이 필요 없음.

14) 「신용협동조합법」

제26조의2(총회 결의의 특례) ①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 투표의 통지·방법, 그 밖에 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다.

1. 조합의 해산·합병 또는 분할

2. 임원(제27조제3항에 따른 임원으로 한정한다)의 선임

24조(총회의 결의사항 등)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3. 임원의 선임과 해임

1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③선거별 선거운동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5항제1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제3항제1호 및 「산림조합법」 제3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선출방법 중 총회 외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와 「새마을금고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이사장선거: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른 방법

《선거별 선거운동 방법 비교》

구분	제24조제3항제1호	제24조제3항제2호	제24조제3항제3호
적용 대상	직접투표로 선출되는 이사장	총회에서 선출되는 이사장	중앙회장 ¹⁶⁾
선거 운동 방법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공개행사에서 정책 발표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u>선거일 후보자 소개소견 발표</u>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공개행사에서 정책 발표	선거공보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u>선거일 후보자 소개소견 발표</u>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공개행사에서 정책 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한 제24조제3항제1호에 「신용협동조합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조합원의 투표로 선출되는 이사장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6) 제24조제3항제3호에는 중앙회장 외에도 ‘대의원에서 선출하는 이사장’의 선거방법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으나, 신용협동조합은 대의원에서 선출하는 이사장은 없어 비교에서 제외하였음.

다.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의 재임 중 기부행위 제한 등
(안 제35조 및 제36조)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이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축의·부의금품 제공제한 대상에 「신용협동조합」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5조(기부행위제한) ① ~ ④ (생략)	제35조(기부행위제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중앙회장과 <u>「새마을금고법」</u> 에 따른 이사장·중앙회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⑤ ----- ----- ----- <u>「새마을금고법」</u> 및 <u>「신용협동조합법」</u> 에 -----.
제36조(조합장 등의 축의·부의금품 제공제한)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u>「산림조합법」</u> 에 따른 조합·중앙회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등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조합등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등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	제36조(조합장 등의 축의·부의금품 제공제한) ----- ----- <u>「산림조합법」</u> , <u>「신용협동조합법」</u> ----- ----- ----- ----- ----- ----- ----- ----- ----- -----

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 -----..
-------------------------	------------------

「공직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를 명목으로 부정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범위에서의 기부행위를 제한¹⁷⁾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¹⁸⁾하고 있음.

이러한 「공직선거법」과 동일한 취지에서 현행법에서도 농업협동조합 등 의무위탁 대상기관의 조합장·이사장 및 중앙회장이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조합장 등이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 조합 등의 경비임을 명기하게 하는 등 제한을 두고 있음.

17)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115조(재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 제117조(기부받는 행위 등의 금지) 및 제118조(선거일후 답례금지)

18) 「공직선거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3조(候補者 등의 寄附行爲制限)·제114조(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 등의 寄附行爲制限)제1항 또는 제115조(第三者의 寄附行爲制限)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81조(團體의 候補者 등 초청 對談·討論會)제6항[제82조(言論機關의 候補者 등 초청 對談·討論會)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81조제6항·제82조제4항·제113조·제114조제1항 또는 제1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정당의 대표자·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대담·토론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나 그 임·직원과 제삼자[제116조(寄附의 勸誘·요구 등의 금지)에 규정된 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에게 기부를 지시·권유·알선·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제261조제9항제1호·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17조(寄附받는 행위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안은 현행 의무위탁 대상기관의 조합장·이사장 및 중앙회장의 기부행위 제한 등의 규정을 신용협동조합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금품 제공 등을 통한 유권자 의사의 왜곡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36